

KIPA ISSUE PAPER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 시간 규제 현황 비교

조민주 연구원(규제정책연구실)

배정윤 연구원(규제정책연구실)

임현철 연구원(규제정책연구실)

1.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 노동 시간 현황
2. 주요 4개국 노동 시간 규제 현황
3. 우리나라 노동 시간 규제 변화
4. 시사점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노동 시간 규제를 비교하고자 한다. OECD 기준 장시간 노동 국가인 대한민국의 노동 시간 규제 현황 비교로 정책적 대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주요 선진국은 노동 시간 규제의 시작을 알린 영국, 노동생산성이 높은 독일, 그리고 주35 시간제가 정착한 프랑스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노동시장 구조인 일본의 규제와 현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 규제 및 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 전반적인 노동 시간 규제와 정책을 파악한다.

1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 노동시간 현황

■ OECD 가입국 노동 시간 현황 (OECD, 2022)

● 연간 실노동시간: 전체 취업자

- 2021년 기준, OECD 가입국 평균 연간 실노동시간은 1,716시간
- 2008년 1,788시간에서 72시간 감소 (2013년 1,766시간, 2018년 1,753시간)
 - 다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1,668시간으로 급격히 감소 후 평소 수준으로 회복
- OECD 평균보다 짧은 연간 실노동시간인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일본
 - 독일 1,349시간, 덴마크 1,363시간으로 연간 실노동시간이 가장 짧음
- OECD 평균보다 긴 연간 실노동시간인 국가로는 한국, 미국, 멕시코 등
 - 멕시코 2,128시간, 대한민국 1,915시간으로 평균보다 상당히 긴 노동 시간으로 확인
- 유럽연합(EU) 27개 국가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1,566시간

● 주당 노동 시간: 전체 취업자

- 2021년 기준, OECD 가입국 평균 연간 주당 노동 시간은 36.8시간
 - 1997년 39.4시간에서 2.6시간 감소 (2007년 38.7시간, 2017년 38시간)
 - 독일 35시간, 영국 36.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짧은 수준
 - 멕시코 43.1시간, 대한민국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긴 수준

● 우리나라 노동 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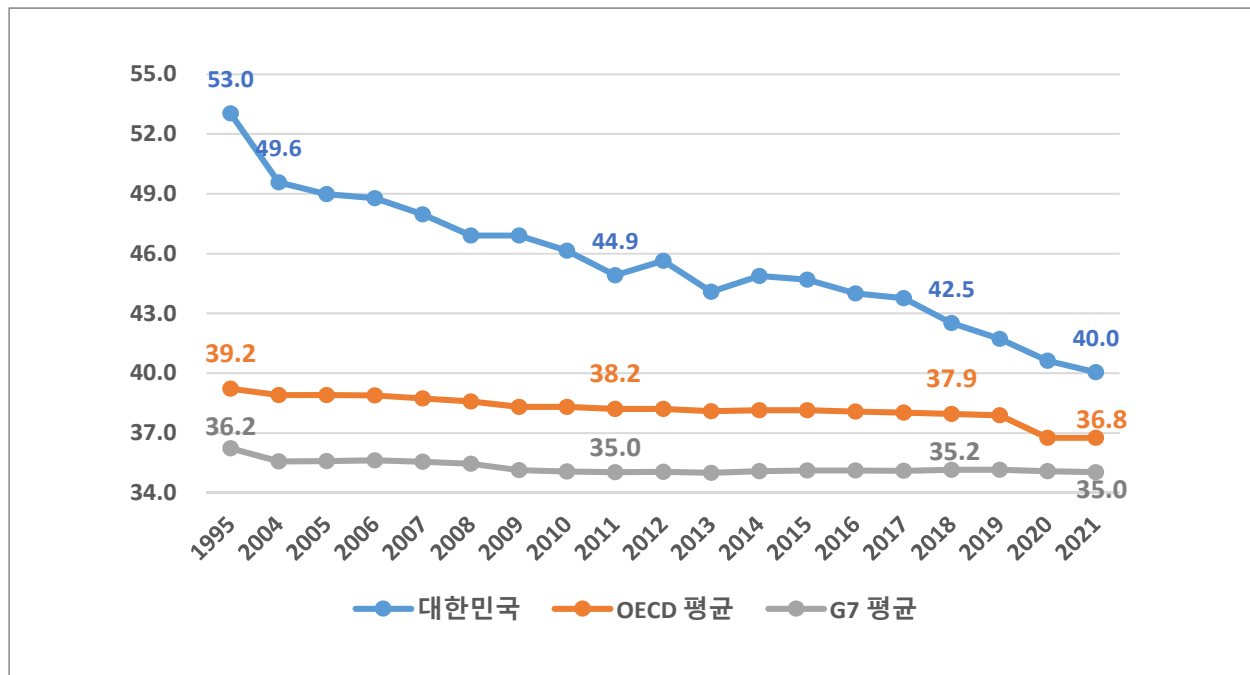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실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긴 수준
 - OECD 평균보다 연간 199시간 길고, 독일보다는 연간 521시간 더 길게 노동하는 것으로 확인
 - 2008년 연간 2,228시간에 비하면 대폭 노동 시간이 감축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2018년을 기점으로 연간 2,000시간 미만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주당 노동 시간은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긴 수준
 -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G7 평균보다 5시간 장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파악
 - OECD에 가입한 1995년엔 주당 노동 시간은 53시간이었고, 주 5일제를 도입한 2004년엔 49.6시간, 전체적으로 시행한 2011년엔 44.9시간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한 2021년에는 40시간으로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 (그림 1 참조)

표 1 OECD 연간 실노동시간 추이: 전체 취업자

	대한민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OECD 평균
2008	2,228	1,543	1,447	1,525	1,771	1,788
2009	2,174	1,531	1,405	1,516	1,714	1,753
2010	2,163	1,540	1,426	1,507	1,733	1,772
2011	2,136	1,546	1,427	1,515	1,728	1,772
2012	2,119	1,541	1,408	1,531	1,745	1,770
2013	2,106	1,526	1,397	1,534	1,734	1,766
2014	2,076	1,518	1,400	1,542	1,729	1,768
2015	2,083	1,519	1,401	1,525	1,719	1,767
2016	2,068	1,522	1,398	1,541	1,714	1,765
2017	2,018	1,508	1,389	1,536	1,709	1,757
2018	1,993	1,514	1,385	1,536	1,680	1,753
2019	1,967	1,518	1,382	1,537	1,644	1,742
2020	1,908	1,407	1,324	1,364	1,598	1,668
2021	1,915	1,490	1,349	1,497	1,607	1,716

출처: OECD.Stat (2022)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1 OECD 주당 노동 시간 추이: 전체 취업자



출처: OECD.Stat (2022) "Average usual weekly hours worked on the main job"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주요 4개국 노동 시간 규제 현황

■ 노동 시간 규제의 역사

- 노동 시간 상한 규제
 - 노동 시간 길이 규제는 노동운동의 발화점이었고, 노동법의 근간
 - 각국 노동시간법제는 노동 시간의 1일 또는 1주의 길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작
 - 1833년 영국의 아동노동법, 1839년 프러시아의 아동노동법, 1841년 프랑스의 아동노동법 등 유럽 각국 노동법의 모태는 노동 시간의 길이를 제한하는 것
 - 1919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 창립총회에서 첫 의제도 노동 시간 길이를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 독일의 노동 시간 규제 현황

- 독일 「노동시간법」 제3조에 따르면, 노동자의 1일 노동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주 단위 법정 기준 노동 시간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 다만, 동법에서 1일 노동 시간을 최대 10시간까지, 즉 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
 - 이런 경우, 6개월 또는 24주 범위에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돼야 함
 - 일요일과 법정휴일 경우에도 준용

■ 영국의 노동 시간 규제 현황

- 영국은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를 최초로 시도한 국가
 -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공장법¹ 체계로 노동 시간 규제를 최초 도입한 국가
 - 다만, 계약법 전통을 계승한 영국의 법적 불간섭주의 원칙으로 노동조합을 통한 노사관계 규율 원칙은 노동 시간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감소하는 원인

¹ 공장법 (Factory Acts), 영국 의회는 1833년 아동과 여성의 노동 시간을 규제하는 법 들을 만들. 1883년 당시 공장법은 9~13세 아동은 1일 8시간, 14~18세 청소년은 1일 12시간 이하로 1일 기준 노동 시간이 최초로 도입됨 (남궁준·김근주·구미영, 2019).

- 영국 노동 시간 관련 법률은 산업별·직역별 특성을 고려한 노동 시간 규제 또는 연소자(여성, 아동) 등 인적 속성에 따른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
- 영국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이며, 일일 노동 시간은 8시간
 - 주 48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하나, 영국 정부는 연장 노동 및 연장 노동 수당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으며 이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짐
 - 군·선박·항공 등 특수 직업군은 일일이나 주별 노동 시간의 제한에서 예외
 - 18세 미만 노동자는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0시간

■ 프랑스 노동 시간 규제 현황

- ‘주 35시간 근무제’의 프랑스
 - 2002년 1월, 프랑스 공식 법정 주당 노동 시간은 35시간 또는 연 1,600시간으로 고정
 -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조화 증진, 그리고 기업 및 산업별 사회적 대화 재개란 세 가지 목적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추진했음
 - 노사 간 합의를 권장했으며, 10% 이상 노동 시간 단축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6% 이상 신규 채용 또는 유지로 주당 노동 시간을 35시간 이하로 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명시했음
 - 1일 최대 노동 시간은 10시간이며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
 - 12주 동안 평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일본의 노동 시간 규제 현황

- 같은 듯 다른 일본판 ‘주 52시간 근무제’ (일본 「노동기준법」 제36조)
 - 2018년, 일본 또한 노동 시간 상한을 두는 법을 제정함
 - 법 제정 전,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됐지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제한 없는 초과 근무가 가능했었음
 - 법률 개정으로, 초과 근무 상한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최장 노동 시간은 주당 51.25시간임 (OECD, 2021)
 - 초과 근무 규제 예외 업종으로는 신기술·신제품 등 연구·개발직이며, 초과 근무 규제 적용 유예 대상 직군은 건설·자동차 운전·의사·사탕 제조에 대해 5년 유예 경과 규정을 뒀음

표 2 주요 국가 노동 시간 규제 현황

국가	법정 노동 시간	비고
대한민국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	법정기준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 노동 주당 최장 12시간 최대 주 노동 시간은 52시간
독일	1일 8시간 (최대 1일 10시간)	1일 8시간(다만, 1일 2시간 초과 근무 가능) 1주 단위 법정 기준 노동 시간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6개월 또는 24주 범위에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
프랑스	주 35시간 최대 주 48시간	법정주당노동시간은 주 35시간 1일 최장 노동 시간은 10시간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 연속하는 12주 동안 평균 44시간 초과 제한
영국	1일 8시간 최대 주 48시간	1일 8시간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 18세 미만은 주 40시간 (다만, 초과 근무 관련 법적 규정 없음)
일본	주 40시간 최대 주 51.25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월 45시간, 연 340시간으로 규정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51.25시간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21을 바탕으로 재작성

3 우리나라 노동 시간 규제 변화

■ 국내 노동 시간 규제 변화: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 1953년, 「근로기준법」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
 - 제헌 「근로기준법」의 법정 노동 시간²은 주 48시간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주 60시간까지 노동이 가능
- 1989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 44시간, 최대 64시간
 - 개정 「근로기준법」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 44시간으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주 56시간까지, 휴일 포함 최대 주 64시간까지 노동이 가능
 - 「근로기준법」 제정 35년 만에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됨
-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 40시간, 최대 68시간
 - 2003년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단축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했으며 최대 주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
 - 다만, 주말 근무는 연장 근로 12시간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연장 근로 12시간에 주말 근무 16시간을 합해 최대 주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³
 - 주 5일 근무제는 2004년 관공서와 대기업을 비롯한 큰 사업장에서 시행되어 2011년 특례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
 - 관공서와 대기업부터 적용됐으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특례업종⁴이 광범위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법정 노동 시간은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 2018년 7월, 「주 52시간제 근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유지하되, 휴일 포함 최대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함
 - 개정으로 기존 주당 초과 근무 시간이 최장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감소함
 - 2018년부터 대기업과 관공서를 비롯한 300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 확대 적용

² 법정노동시간이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를 기준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 시간임. 「근로기준법」 제50조 성인 노동자 기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명시 (법령정보센터, 2022)

³ OECD (2020) "The 2018-2021 working time reform in Korea: A preliminary assessment" 참조

⁴ 2003년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특례업종으로 ①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다. 당시,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었음 (한국노동연구원, 2015)

- 노동 시간 특례업종⁵ 축소 및 관공서 공휴일 규정 민간 기업 적용 등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했음. 다만, 교통 서비스·보건 의료 직군은 예외 대상

표 3 「근로기준법」 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의 변화

1953년 「근로기준법」	1953년~1988년	법정 근로시간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
		제42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1989년 개정 「근로기준법」	1989년~2002년	법정 근로시간 주 44시간, 최대 주 64시간
		제42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 (주 5일 근무제)	2003년~2017년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최대 주 68시간
		제42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도서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⁵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김근주, 2018)

4 시사점

■ 노동 시간 길이 규제는 각국의 노동법과 노동시간법제의 근간

- 각국 노동시간법제는 노동 시간의 1일 또는 1주의 길이를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
 -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창립총회에서 첫 의제도 노동 시간 길이를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작

■ 주요 노동 선진국의 노동 시간 규제는 법적 규제보다는 노사 합의에 중점으로 노사 양측의 갈등이 최소화

- 산업혁명 발상지인 영국은 노동 시간 규제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
 - 1일 8시간,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
 - 다만, 연장 노동 및 관련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중시
 - 2021년 기준, 연간 실노동시간은 1,497시간이며, 주당 노동 시간은 36.7시간
- 주 단위 법정 기준 노동 시간 규제가 없으나, 노동생산성이 높은 독일
 - 1일 8시간 (다만, 1일 2시간 초과 노동 가능)
 - 주 단위 법정 기준 노동 시간 규제가 없음 (24주 이내 1일 평균 8시간 초과 불가)
 - 2021년 기준, 연간 실노동시간은 1,349시간이며, 주당 노동 시간은 35시간
- 주 35시간 근무제의 나라 프랑스
 -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며, 노사 간 합의 권장
 - 법정 주당 노동 시간은 35시간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
 - 연속하는 12주 동안 주당 평균 44시간 초과 제한
 - 2021년 기준, 연간 실노동시간은 1,490시간이면, 주당 노동 시간은 36.9시간

■ 지속적인 노동 시간 감축 노력에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인 우리나라

- 2004년 주 5일제 근무 도입과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실노동시간과 주당 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추세
 - 주요 노동 선진국과 비교해, 장시간 노동국이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엄격한 노동 시간 상한 규제가 존재
 - 또한, 노사 간 합의보다는 법적 규제 성격이 강함으로, 수용성이 낮아 정책적 체감도가 낮은 수준임. 따라서, 노사 간 합의를 권장한 프랑스 ‘주 35시간 근무제’ 검토 사례를 참고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더불어, 독일의 ‘노동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 검토로, 규제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성

참고문헌

- 1 OECD (2021).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Navigating the COVID-19 Crisis and Recovery*, OECD Publishing, Paris.
- 2 OECD (2022). *OECD Employment Outlook 2022: Building Back More Inclusive Labour Markets*, OECD Publishing, Paris.
- 3 OECD (2022). *Average usual weekly hours worked on the main job*. OECD Stat.
- 4 OECD (2022).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OECD Stat.
- 5 Hijzen, A. and Thewissen, S. (2020). *The 2018-2021 working time reform in Korea: A preliminary assessment*,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48.
- 6 김근주 (2018). *근로시간법제의 현황과 과제*, 월간 노동리뷰, 2018(06)
- 7 Sanséa, P. Y. (2015).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 동향, 교훈 및 전망*. 2015(09), p.28-40.
- 8 김기선·강성태·조용만·한인상·정영훈·노호창·김근주 (2015).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15-09
- 9 김근주·이정·안주영 (2020).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기타자료 2020-01.
- 10 김승현·이형근 (2018). *일본의 노동시간 단축 추진 현황 및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KIEP 기초자료 18-08.
- 11 남궁준·김근주·구미영 (2019). *영국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19-16.
- 12 이현주 (2018). *기록으로 돌아보는 1953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시간 변화: 「근로기준법」 개정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A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행정연구원
T 02.564.2000 F 02.564.2013 H www.kipa.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이슈페이퍼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본 보고서를 '[저작권법] 제24조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이용하실 경우 한국행정연구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이슈페이퍼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조민주, 배정윤, 임현철(2022).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 시간 규제 현황 비교>.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120호.